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판례 및 수사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발 간 사



경찰의 역할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되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13년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전문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15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신설하였고,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

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왜 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단호히 처벌함과 동시에, 범죄가 쉽게 발생 되지 않게 예방활동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사람들의 혼란을 덜 수 있도록, 학대 판단기준 등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위 책자로 조금이나마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경찰관들, 아동 양육에 힘쓰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모님과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4. 9.

경찰청장 조 지 호

책을 펴내며

경찰청은 '21년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킨 후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인한 큰 변화 속에서 경찰 수사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에는 16개월 아동을 양부모가 학대하여 죽게 만든 양친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신고건수도 '20년 16,149건에서 '23년 28,292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1년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였고, 아동학대 수사전담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3년 교사들이 연달아 자살하면서 교권하락이 이슈화 되었고, 정당한 훈육행위는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오랜기간 영의정을 지낸 황희 정승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듯이, 예로부터 훈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훈육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고, 정서적 학대 범위가 광범위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실정은 훈육을 하는 교사와 부모에게 고충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당한 훈육행위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경찰·법원·검찰의 유·무죄 판례 및 불송치, 불입건 사건을 분석한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5가지 기준으로 총 172건의 사례들을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사항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위 지침서를 통해 교사 및 부모의 훈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관이 신속하게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국가수사본부장 

I 제작 배경 및 아동학대범죄 개요 1

1. 제작 배경 2
2. 구별개념 3
3. 관련법률 동향 3

II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7

1. 가정 내 학대·훈육 판단 기준 8
2. 주요 내용 요약 10
3. 주요 판례 및 수사착안사항 11
 - ① 신체적 학대 11
 - ② 정서적 학대 21
 - ③ 유기 29
 - ④ 방임 30
 - ⑤ 보호자 없이 아동만 두는 행위 (아동 방치) 32
 - 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35
- 〈참고〉 기타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37

Ⅲ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39

1. 학교 내 학대·훈육 판단 기준	40
2. 주요 내용 요약	41
3. 주요 판례 및 수사착안사항.....	42
①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42
②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47
③ 행위의 목적 및 배경	48
④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54
⑤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행동·태도) 및 영향	55
⑥ 목격자 진술 유무	56
⑦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교육 방식	57
⑧ 교육 기법	59
⑨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60
4. 검찰 불기소 사례 및 수사착안사항	62
〈참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안내	63

Ⅳ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66

비고 아동학대 개요 및 주요통계..... 69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판례 및 수사확인사항을 중심으로

I

제작 배경 및
아동학대범죄 개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 제작 배경 및 아동학대범죄 개요

1 제작 배경

'20년 양천서 아동학대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신고 및 사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 '20년 16,149건이던 신고건수가 '22년 25,383건, '23년 28,292건 등 계속 증가

훈육을 빙자한 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 금지가 명시('11년 개정)되고 ②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21년)되는 등 아동 훈육 역시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사회·제도적 개선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당한 훈육 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훈육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아지고, 특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도 발생하면서, 아동 훈육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재수단인 정당한 훈육조치 자칫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훈육하는 사람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부모의 정당한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 '23.2.13. 국민일보 「“잔소리하는 아빠 신고합니다”...늘어나는 대치키즈」

훈육에는 아동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학대 정의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어 훈육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처벌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학대·훈육간 경계가 모호하고,

법원 판례 등 권위 있는 기관 해석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도 훈육·학대에 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아동을 훈육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일반수사관의 경우, 아동교육·훈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나이·배경에 따른 가치관이 달라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주관적 기준도 다르기에 통일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일반적 지침 역시 필요하다.

이에, 위 책 발간을 통해 다양한 판례, 불기소·불입건 사례 등을 모아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위의 위법 여부를 최대한 판단해보고 훈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2 구별개념

- ▶ 훈육과 징계, 체벌의 법률적·사회적 의미는 전문가마다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기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정의
훈육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를
훈계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징계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거나,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체벌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 직접체벌 : 체벌을 가하는 사람이 직접 고통을 줌(예, 회초리 매질행위 등) ▶ 간접체벌 : 체벌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고통을 줌(예, 손들기, 얼차려 등)
학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 각각의 용어들은 법령, 조례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훈육	훈계	징계	체벌	학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舊 민법 등	학생인권조례 등	아동학대처벌법 등

3 관련법률 동향

전반적인 동향

- ▶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훈육방식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나 훈육·학대간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시 △ 교육감 의견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금지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음
- ▶ 해외의 경우, 다수의 유럽 선진국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처음에는 법령상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관습법상 징계권을 빙자한 학대행위가 계속 발생하자 법령상 체벌금지를 명문화함
 - UN에서는 '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에 대해 체벌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징계권 규정부터 삭제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 중임



국내 동향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체벌 금지 명시('10. 10. 5. 제정)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 금지 명시('11. 3. 18.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3. 6월 위 조항을 삭제하고 제40조의3에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정('14. 1. 28. 제정)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절차 등에 있어 형사특례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책무 규정('15. 3. 27. 개정)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 삭제('21. 1. 26. 개정)

「민법」 제915조(징계권) - 삭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사유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법제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3. 9. 1. 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생활지도 범위,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지도 불응시 조치* 등 규정

*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 등 조치 가능(교원지위법 제25조)

▶ 아동훈육 담당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23년 개정)

구분	주요 내용
① 교원지위법	-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없는 직위해제 금지 -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감에 의견제출 의무 부여
② 초·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존중·지원해야 할 보호자의 의무 및 교장 책무성 강화 규정
③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 명시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
④ 교육기본법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존중 의무 부여

해외 동향

▶ 보통 징계 규정 삭제 후 학대행위가 없어지지 않아 체벌금지 명문화

구분	내용
스웨덴	'66년 징계규정 삭제 → '79년 체벌금지 명문화
오스트리아	'77년 징계규정 삭제 → '89년 체벌금지 명문화
독일	'57년 징계규정 삭제 → '97년 학대금지 명문화 → '00년 체벌금지 명문화

▶ '89년 UN아동권리협약 채택 → '91년 한국 비준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학교 내 징계규정은 각 나라마다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미국 일부지역의 경우 마약·흉기 소지 등 주요 일탈행위에 대해 정학·퇴학 등을 규정해 놓았음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판례 및 수사확인사항을 중심으로

II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I.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1 가정 내 학대·훈육 판단 기준

- ▶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이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 보호자에 의한 범죄로 아동의 발달 및 정신 건강에 영구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학대의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법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 학대·훈육 간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 최근 판례는 피고인이 훈육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양형 이유로 참작할 뿐, 도구 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상해, 장애, 두려움·수치심 등 감정)을 고려해 학대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 ▶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급하게 제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유형력 행사의 경우 학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 대표 판례

1. 대법원 2020도7625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 (중략)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3고단224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학대행위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아동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또한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아동들은 향후 결핍된 정서를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 대표 판례

3.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고단653

아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소중한 존재로,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으로 드러나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2 주요 내용 요약

신체적학대 [11쪽]

- ▶ **[학대의 정도]** 판례는 **상해 발생 시 학대 인정**, 단순 폭행이라도 폭력을 수반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학대 인정 판단
 - 도구 사용 시 일반적으로 학대 인정,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전에 아동과 규칙을 정하였을 경우 불인정
- ▶ **[훈육 목적]** 행위자가 훈육 목적을 주장할 경우,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도구를 이용한 폭력 행사 시 학대 인정**, 다만 아동의 위험한 행동(이동 중 차량에서 문을 여는 등 행위, 비행행위)을 방지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 하 일회적 행위 시 불인정
- ▶ **[부정적 영향]** 아동은 심리적 불안감·죄책감·두려움·거부감·회피감정과 위축된 행동을 겪을 수 있음
- ▶ **[연령 및 장애여부]** 아동 연령 및 장애 여부 등 아동 스스로의 보호 능력 미달 여부 고려
- ▶ **[사회상규 위반 여부]** 학대 방법·정도·횟수·기간과 아동의 나이·건강상태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 ▶ **[행위자 태도]**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 확인 시 학대 인정

정서적학대 [21쪽]

- ▶ **[학대의 정도]** 심한 욕설 및 폭언, 음식물 강제 섭취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유발 시 고의 인정
- ▶ **[부정적 영향]**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을 집에서 내쫓는 등 행위도 학대 인정
- ▶ **[연령 및 장애여부]** 아동의 연령, 성향, 학대 전후 상태 변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를 고려하여 학대 여부 판단
- ▶ **[사회상규 위반 여부]** 전후상황을 고려해 정서적 발달 저해 위험성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학대 불인정
- ▶ **[아동을 내쫓는 행위]** 아동을 집 밖에 내보내고 일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경우 학대 인정

유기 [29쪽]

- ▶ **[유기]** 보호 없는 상태에 아동을 두었는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
- ▶ **[베이비박스 유기]** 인계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담당자와의 대화 또는 인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아동 보호 공백 및 위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인계 전 산후조리 미수행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거나 아동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 발생 개연성이 있었는지 검토

방임 및 외출 방치 [30쪽]

- ▶ **[출생미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육적·사회적·의료적 방임이 있었는지 검토
- ▶ **[외출 방치]** 아동 나이를 고려, 아동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험에 노출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방임 인정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35쪽]

- ▶ **[진술분석]**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진술분석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
- ▶ **[NICHD 조사 기법]** NICHD 기법에 따른 진술은 개방형 질문에 따른 구체적 답변으로 진술 오염 및 유도 가능성 적어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나,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거나 발언의 자발성이 의심되면 신빙성 배척

기타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37쪽]

- ▶ **[처벌불원 시]** 아동복지법 위반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진행
- ▶ **[임시조치 신청]** 학대·임시조치위반 이력 고려하여 임시조치 4~7호 필요성 검토, 임시조치 1~3호와 병행 신청
- ▶ **[아동보호사건 송치]** 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가정의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사건 의견 적극 활용
- ▶ **[지자체 통보]** 지자체 통보 철저히 하여 가정 보호 방안 검토 연계하고, 사례회의 결과 수사기록에 첨부

3 주요 판례 및 수사착안사항

〈 지침에 대한 설명 〉

- ▶ 본 지침은 가정 내 훈육과 학대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 대하여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를 취합한 후 분류**한 것이다.
 - ▶ 일반적으로 훈육과 학대 간 경계가 애매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외, 가정 내 발생하는 유기·방임(아동 방치 행위 포함)도 판단 시 고려할 부분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 최근('15~'23년) 판결문과 시도청별 불송치·입건 사건을 선정 후 분석하였으며, **기준별로 유의미하게 언급되는 내용을 전문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 ※ 판례에 적시된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1 신체적 학대

1. 상해 및 신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유발하는 경우(학대의 정도)

-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
- △ 주먹으로 아동을 때리는 행위 △ 거칠게 아동을 잡아당기는 행위 △ 골프샤프트·막대기 등 도구로 폭행하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 인정
- 폭력을 수반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폭행이 있는 경우 신체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

※ [참고] 2024 대법원 아동학대 양형기준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된다'는 문구는 2022년 양형기준부터 추가

학대 인정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3869] 피해아동(3세)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롯데월드역으로 가던 중, 피해아동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말을 듣지 않자, 피해아동의 상의 부분을 잡아 거칠게 뒤로 당겨 앉히고,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수회 튕겨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 훈육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학대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275] 친부가 피해아동이 장시간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씹힐 년, 미친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폭행 ➔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추어 볼 때 죄책도 무거움
	[수원지법 2019고단3516] 친부가 피해아동(15세)이 수학학원에 계속 지각한다는 이유로 골프 샤프트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학대 ➔ 피고인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의 정도가 지나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 (중략)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의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전주지법 2017노1690] 친부가 피해아동(15세)이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자녀를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행사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수사 시 착안 사항

- 가정 내 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CCTV 등 물적 증거 부족한 경우, △폭행 정도 △폭행 주기 및 횟수 △폭행 방법(도구) 등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을 상세히 확보
- 폭행으로 인한 뚜렷한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의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 진술, 사진 촬영 등으로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여 수사기록에 현출

2. 훈육 목적으로 아동을 폭행한 경우

- 최근 판례는 훈육 목적이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다른 훈육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최초라·웃걸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폭력 행사 시 학대 인정
- 다만, △ 이동 중 차량에서 아동이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급하게 제지하는 행위 △ 아동의 비행행위 교정을 위한 1회성 행위 △ 장에 있는 형제 괴롭힘 및 보호자 폭행에 대응하는 행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 행사일 경우 불기소처분한 사례 존재

학대 인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3고정43, 2023고단1184] 피해아동(3세)이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401] 친모가 피해아동(14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자녀이자 피해아동의 형인 A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도록 해 신체적학대 ➔ 친모의 신체적 학대 교사 인정, 아들인 형으로 하여금 동생을 폭행하게 한 행위는 훈육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4고단80] 나무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머리를 붙잡고 식탁에 2회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처가 말리며 피해아동을 안방 안으로 들여보내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5회 걷어 차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좌상 등 상해 ➔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창원지법 2022고단734] 피해아동이 동생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팔과 종아리를 수회 때려 신체적학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훈육행위라고 주장하나, 다른 훈육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645] 피해아동을 혼내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2~3회 때려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릴 당시 신체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물리력이 오로지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학대 불인정	[○○청 혐의없음 송차-검찰 불기소] '22.2.26. 20:52경 피의자(친모)는 승용 차량 내에서 피해아동이 고집을 부리며 마트에서 물건들을 이유 없이 버려 이를 제지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아동의 불상 부위 약 2회 폭행을 가하고 승용 차량에서 내리게 함. ➔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핸드폰을 달라고 떼를 쓰며 창문과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과정이었으며, 친모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아동이 먼저 친모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이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아동의 얼굴 부분을 2회 손으로 가격한 것으로,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학대 불인정	[○○청 혐의없음 송치-검찰 불기소] '23.9.17. 피해아동이 친오빠가 앉아 있던 차량 시트를 뒤에서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보기 싫으니깐 나가라, 안 나가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u>손으로</u>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어 신체적 학대 ➔ 피의자는 평소 피해아동이 틱장애가 있는 오빠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이에 화가나 피해아동의 이어폰을 던지고 집에서 나가게 몸을 밀었던 사실이 있었지만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평소 피해아동이 그의 오빠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이를 막을 필요가 있어 훈계 차원에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
	[○○청 혐의없음 송치-검찰 불기소] '22.12.12. 피해아동이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 ➔ 피해아동은 친모에게 대들며 밀치자, 이에 친모가 제지하기 위해 목을 누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의정부지법 2018고합53, 서울고등법원 2019노2831] 피해아동이 고아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치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u>손바닥으로</u> 1~2회 때리고 차안에서 2~3대 밀 듯이 때리고, 차 안에서 피해아동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어 신체적 학대 ➔ 피해아동이 정차한 차에서 뛰어 내리고 차 안에서 발버둥 치는 피해아동을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체적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체적 학대라고 하더라도 훈육의 의사로 이루어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
	[○○청 혐의없음 송치-검찰 불기소] 피의자는 '22년 9월경 피해아동이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엎드려뻥쳐와 기마자세를 시켜 신체적 학대 ➔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아동이 담배를 피는 등 사유로 훈육 목적 하에 교육을 하는 과정이었던 점,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단 1회에 걸쳐 30분에 그친 점, 훈육 직후 피해아동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며, 피의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범의 또한 인정할 증거 없음
	[○○청 혐의없음 송치-검찰 불기소] '22.9.16. 피해아동이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여 빼앗으려 하자 반항한다는 이유로, <u>손으로</u>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 다리 등을 핏긋는 등 폭행 ➔ 피해아동은 7년 전 ADHD 등 장애 진단으로 약물 치료 중으로,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훈육 중 과도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머리를 1회 폭행한 것으로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나,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학대행위자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행위의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배경, 전후 사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행위 판단

3. 도구 사용하여 신체·정서적 학대한 경우

- 막대기 · 효자손 · 당구채 · 야구방망이 · 행거봉 등 도구 사용 시 일반적으로 학대 인정되나, 사전에 아동과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하였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인정하는 사례도 존재

학대 인정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고단1239] 친부는 피해아동(14세)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불상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아동의 왼쪽 손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 ➡ 폭력 행사 등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는 되돌리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아동은 여전히 피고인들과 살기를 꺼리고 있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고단2263] 피고인은 나무막대(길이 약 77cm, 두께 약 3cm)로 피해아동(9세)의 오른 눈, 오른 다리, 오른 팔,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오른 눈 주위에 검은 멍이 들게 하고, 피해아동(4세)의 머리를 1회 때려 신체적학대 ➡ 피고인이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학대 불인정	[○○청 불입건결정] '23.11.13.~15. 피해아동이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 ➡ 피해아동은 충치 치료 중 피험의자와 양치질을 잘하기로 약속하였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피해아동 본인 스스로가 사랑의 회초리로 손바닥 1대 맞기로 룰을 정하였다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따끔한 정도의 강도로 손바닥 1대를 맞은 것이라고 진술, 약속에 의해 훈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위로 학대 고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 멍 · 타박상 등 상해 발생 시 판례는 학대 인정하는 경향

학대 인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고단373] 피해아동의 생활습관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친모와 계부가 욕설하며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겁주는 말을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쳤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인천지법 2022고단3154] 피고인은 피해아동(6세)이 잘못을 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및 엉덩이 부위를 약 5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움.
-------	--



학대 인정	[수원지법 2018고단2530]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하여 반성문을 쓰도록 훈육하다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u>호자손으로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기저귀를 감아 아동의 뺨, 어깨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u> ➔ 부모의 이혼과 주거환경의 잦은 변경으로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아동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엄한 훈육 원칙으로 포장하여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8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몸에 상당한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아이의 잘못으로 돌리고, 훈육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울산지법 2017고단2285] 친부가 피해아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병신, 또라이, 인간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u>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알루미늄 소재 행거봉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u> ➔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흡연 문제에 대한 훈육적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된 행거봉을 이용해 피해아동을 50회 가량 때려 둔부 전체가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 횟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	---

수사 시 착안 사항

-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로 주거지 출동 시 학대 도구 사진 촬영, 압수 등으로 증거 확보
- 피해아동이 미처 진술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학대행위자 휴대폰 및 노트북(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으로 피해아동 사진(상해), 학대 영상 및 녹음자료 확보하여 추가 피해 확인
- 피해아동 상해 발생 시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 확보
- ① 피해아동 의료지원 필요 시 ②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의학적 소견 및 진료기록 필요 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아동보호위원회) 통해 의뢰

4. 아동에게의 부정적 영향 확인하였을 경우

- 가정 내 신체적학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
- 폭행으로 인한 외상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겪은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해야 하며, 죄책감·두려움·거부감·회피 감정과 위축된 행동 및 수면장애 등으로 표출될 수 있음**
- 판례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는 아동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아동에게 그 자체로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신체의 성장 및 정서적 발달 지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바로 인정하는 경향**

학대 인정	[수원지법 2017고단5393] 친부는 피해아동(생후 8개월)이 본인을 싫어하자 화가 나 <u>피해아동의 엉덩이를 한손으로 받쳐 들고는 서서 다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이마에 흠이 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u> ⇒ 장기간에 걸쳐 애착관계와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아동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악영향을 주었고, 실제로 상담을 요하는 정서적 불안 증세 및 발달 지체 등을 보이기도 함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3고단224] 친모가 피해아동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각 피해아동의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때리는 등 총 11회 신체적 학대 ➔ 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고, 집안일을 아동들에게 전가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으로, 아동 입장에서 그 학대행위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아동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아동들은 향후 결핍된 정서를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2고단330] 피해아동이 계모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굴이 든 봉지를 피해아동에게 던져 다리에 맞춘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

수사 시 착안 사항

- 피해아동의 진술, 상담 일지, 병원 진료기록, 심리 검사 결과, 일기 등에서 학대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
- 범죄피해평가 필요 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 종합 평가하여 수사 서류에 첨부

5. 연령 및 장애 여부 등 아동 스스로의 보호 능력 부족한 경우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저연령, 지적장애 등)를 고려하여야 함**

학대 인정

[대구지법 2021고단3990] 계모는 피해아동(11세)을 바닥에 눕혀 놓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상체, 하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총 13회 상습학대

➔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에게 수차례 상습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지적 장애로 인해 그러한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고단2062] 피해아동이 동생을 때린 이유를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울산지법 2014고단3919] 계모가 피해아동(7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복자매이자 피고인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려 손목 및 손가락의 찰과상 등 상해

➔ **피해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고단2249] 친부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아동(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

➔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자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 시 착안 사항

-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른 아동의 방어능력 부족 및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기록에 현출**

6. 정당행위 여부 판단할 경우

- 학대 방법 · 정도 · 횟수 · 기간과 피해아동의 나이 · 건강상태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판단
- 판례는 징계권 폐지 이전에도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 아동에게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를 결박하는 행위 △ 나뭇가지로 아동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행위는 학대 인정

학대 인정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고단1120] 피해아동이 가출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건을 피해아동의 입에 둘러 재갈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수건을 감고, 피해아동의 팔목, 발목 부위에 테이프를 감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혀 놓아 신체적 학대 ➡ 비록 훈육의 목적이었고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선택한 훈육 수단 또는 방법,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해아동의 연령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피해아동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폭력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수원지법 2018고정1924] 추석명절에 받은 용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아동(11세)이 말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불상의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 ➡ 훈육 명목 하 수 차례 피해아동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의 구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피해아동이 폭력 행위로 눈물을 흘리는 등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의 저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303, 2017고단1536] 친모가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복 끈을 이용하여 손과 발을 묶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 제반 상황 등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판례가 실시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으로 수사결과보고서에 요건별 상세히 검토하여 작성



7. 피고인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 확인하였을 경우

- 피고인의 진술에서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학대 판단에 고려

학대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2832] 친부가 피해아동(14세)이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년아, 집안일을 왜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한 대씩 때려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 피고인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왔고, 수사기관에서 '이년아'라는 표현을 피해아동에 대한 애칭이라고 진술하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당당하게 진술할 정도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임

수사 시 착안 사항

- △사건 유형 분석 △부모 등 관련자 진술 분석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리평가, 성향 분석을 통한 수사면담 및 신문 전략 수립 등 범죄분석(과학수사) 의뢰

② 정서적 학대

1.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학대의 정도)

-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
- 1)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학대 유형, 2)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 유형 포함
- 판례는 △ 욕설 및 폭언 △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하는 행위 △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 차별하는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학대 인정

학대 인정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2고단93 2022고단274] 비자를 발급하러 가야하는데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 야이 씨발년, 너 골때리는 년이네, 죽든 말든.. 아이씨.. 자식새끼라고.."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 ➡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해 학대 인정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0고단493] 계모가 피해아동(15세)에게 바닥에 흘린 라면 국물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아빠를 시키냐, 바보, 공부바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 정서적학대 ➡ 아동은 경계성 지적 장애가 있고, 친모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소 '바보가 바보를 낳았다'는 발언을 한 것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가함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단315] 피해아동이 전날 학원에 가지 않은 공소외 A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똥져야지"라고 욕설을 해 정서적학대 ➡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 인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3고단1826] 계모가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로 '이 집에 널 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난 내 동생이랑 손절해도 상관없이 널 내보낼거야. 그러니 니 입으로 집 가서 살기 싫다 해. 안 그럼 피보는 수가 있어. 다음에 나갈때 피보고 나갈거야. 난 너랑 살기 싫어. 죽어도 싫어. 징그러. 재수없어. 꺼져. 널 데리고 온 걸 후회해. 수없이 많이 후회해. 그러니 니 발로 꺼져'라는 메시지를 전송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1고단3619] 친모가 피해아동이 잔인한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는 이유로 마늘 3~4개와 양파 반개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학대 ➡ 훈육의 목적이더라도 마늘과 양파를 먹게 하는 등 행위는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인정

수사 시 착안 사항

- 정서적학대는 외상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아동의 진술 확보가 중요함
 - 피해아동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조력인 참여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라 일자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 피해아동 등(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으로부터 평소 학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진술 확보하고 추가 피해 여부 확인, 피해아동 분리 등 임시조치 검토 시 피해아동등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도 같이 검토
- 학대행위자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행위의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배경, 전후 사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행위 판단

2. 아동에게의 부정적 영향 확인하였을 경우

-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부부간 가정폭력 노출 등 간접적으로 아동을 폭행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을 집에서 내쫓는 행위 등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해 정서적학대 인정
- 정서적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모욕감과 두려움 등 감정,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을 겪고, **미래의 건전한 인간관계 및 가족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학대 인정	[청주지법 2022고단90]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를 알려주다가 피해아동이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것도 모르느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신체, 정서적학대 ➔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친아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고단323] 피해아동(8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A,B)은 피해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차에 태워 파주시 소재 인근 공사장에 내려놓아 정서적 학대 ➔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커다란 정서적, 신체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임

학대 인정	[의정부지법 2021고단5797] 피해아동에게 “너랑은 이제 끝이다”, “집에서 나가라 걸레 같은 년아”, “가출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라고 말을 하는 등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부엌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칼들 중 1개를 고르는 시늉을 하였으며,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과 분리시키자, 계속 전화로 피해아동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너 진짜 죽고 싶냐”, “빨리 안오면 고양이 갈기갈기 찢어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학대 ➡ 내용 자체로 아동이 아닌 성인에 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위협적인 폭언에 해당. 더욱이 아동이 대상이라면 건전한 인격형성 및 가치관 정립에 매우 부정적인 경험과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설령 이 사건 피해아동이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다치기 쉬운 존재이며,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육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단과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법률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훈육 목적이라는 것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4고단173] 피해아동 A(10세), B(11세)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돈을 함께 사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잘못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아파트 베란다로 내보내 약 3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 ➡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양육이 필요한 피해 아동을 수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학대 불인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고단1217] 친모가 피해아동을 목욕시킨 후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정서적 학대 ➡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아동이 감기에 걸릴 것이 우려되어 엉덩이를 가볍게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것이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최근 1세 아동에게의 가정폭력 노출 행위를 1)정서적 학대로 넓게 인정한 판례, 2)언어나 행동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고 부정적인 영향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서적 학대 불인정한 판례와 같이 상반된 판례 존재하며,
- 가정폭력 노출 행위에 있어 판례는 피해아동이 폭력 행위에 노출된 경위, 학대 고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학대 인정	[대법원 2017도 2176] 계모가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친부에게 아동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가위로 친부의 다리를 찌르는 등 방식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부부싸움 하고, 아동들에게 직접 욕설 ➔ 피해아동들은 부부싸움의 결과 가위로 찢겨지거나 어지러워진 집안을 보며 언제 자신들에게도 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친부와 계모가 자신들을 데리고 살기가 싫다는 내용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
	[전주지법 2019고합252]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와 다투면서 친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거나 양육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아동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아동이 건전한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2618] 피해아동(1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투던 중 친모가 피해아동에게 접시를 던져 머리를 맞게 하자, 친부가 피해아동이 보는 가운데 친모의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친모가 집 안에서 피를 흘리는 상황을 피해아동이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은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함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고단695] 피고인(친부)은 시부모님들이 아내에게 잘하라고 혼을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에서 아내가 피해아동(당시 4개월)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보는 중 손으로 화창대 유리를 내리쳐 정서적학대 ➔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어린 아동이어도 아동 앞에서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서적학대 인정
학대 불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고단653] 피고인(친부)은 피해아동(1세)이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 오빠(3세)의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바닥에 짚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켜 정서적학대 ➔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 당시 언어나 행동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무렵의 영아에게 폭력장면의 노출이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기피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애착 형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으며,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은 채로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신체적 학대 행위를 보게 된 것이다. ※ [참고] 피해아동 오빠에 대한 학대 혐의는 인정 (주로 집이나 자동차 안에서 효자손 또는 손으로 수 회 이상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학대행위의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부위도 엉덩이, 다리, 얼굴 등 가리지 않았으며, 학대행위 전후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훈육의 일환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정서적학대는 피해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학대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확인
- 피해아동의 진술, 상담 일지, 병원 진료기록, 심리 검사 결과, 일기 등에서 학대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
- 범죄피해평가 필요 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 사회적 피해 등 종합 평가하여 수사 서류에 첨부

3. 연령 및 장애 여부 등 아동 스스로의 보호능력 부족한 경우

- 판례는 연령 및 장애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대 판단을 하기 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 성향, 전후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판단**

학대 인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고단712]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TV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맨발로 주거지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그고 약 5분간 문밖에 세워 둔 ➔ 피고인이 훈육의 의도로 피해자를 문 밖에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해아동은 당시 만 4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5분간 문 밖에 세워두었으나 피해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결코 짧은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인 M은 피해아동이 문 앞에 울고 있자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는 M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맨 발로 문 앞에 서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으로 하여금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배제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단354] 피고인(친부의 동거인)은 피해아동(15세)을 장애인 시설로 보내고 동시에 생활비 1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친부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풀이로 피해아동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주거지 밖으로 피해아동을 내쫓아 정서적학대 ➔ 피고인은 동거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행동

수사 시 착안 사항

- 피해아동이 지체·지적장애 있는 등 스스로의 보호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병원 진료기록,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하고, 미등록장애인일 수 있으므로 장애 등록 여부를 떠나서 장애 여부 판단

4. 훈육 목적으로 아동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을 경우

- 판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훈육 방법은 없었는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은 아니었는지 검토
- 부모가 상습적으로 훈육의 목적 없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을 경우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나,
- 전후상황(맥락)을 고려해 아동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사전에 정한 규율에 따르지 않은 경우, 훈육의 필요성 인정되고 정서적 발달 저해 위험성 인정 어려워 불기소처분한 사례 존재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3고단50]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실수로 거울을 넘어 뜨려 피해아동 여동생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안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아동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빨리 나와 안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깨로 방문을 수회 밀치고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 방문을 부서지게 하고, 이후 피해아동 친모가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친모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아동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은 만 6세인 피해아동이 거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의 모친을 잡아끌어 피해아동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해아동은 당시 벌벌 떨며 “아빠가 때리면 어떡해.”라고 하면서 계속 우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학대 인정	[수원지법 2020고단6812] 계모가 피해아동에게 “아빠가 네 엄마에게 준 교육비는 다 어떻게 하였느냐. 네 엄마가 너의 교육비로 재혼한 것 아니냐. 내가 재무설계 하는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 그 돈을 네 앞으로 해달라고 해라. 네 엄마가 네 뭇의 돈을 가져간 것이다. 네 엄마한테서 돈을 찾아 와라. 네 엄마는 나쁜 년이다.”라는 취지로 수회 반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성적,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아동 친모의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한 것이라고 친모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에 반발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그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어른인 피고인에 대하여 예의없는 언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과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시간을 놓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하였는바, 일련의 행위는 결국 피해아동의 발언에 피고인이 화가 나 한 것으로 보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단315] 피해아동이 전날 학원에 가지 않은 A의 편을 드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똥져야지”라고 욕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쌍놈의 새끼들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 식모야?,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 ➔ 미성년 자녀들에게 훈육 등 이유 없이 정도가 심한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함

학대 불인정	[○○청 혐의없음 송치-불기소] 친부가 주거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집에 오면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해 정서적학대 ➔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훈육이 필요하다는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고 자초지종을 확인 후 선생님께 사과를 하라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이 발각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 및 아동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 혐의없음 송치-불기소] 피의자(친부, 별거 중)는 '23.1.15.과 1.17. 피해아동과 통화하면서 피해아동이 '너' '왜' 등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이자식' '임마' '양아치'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여 정서적학대 ➔ 피의자와 피해아동이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해아동이 “너” “왜” “어쩌라고” “너 언제 철들거나” “거짓말은 니가하는 거지” “핵심만 말하라니까 핵심만” 등 계속 반말하여 훈육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라도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청 불입건결정] 친모가 피해아동이 학교생활 및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 안 듣는 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 ➔ 평소 피해아동을 훈육할 때 말로 타이르는 편이며, 잘못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으나 체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친모의 훈육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훈육의 정도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학대행위자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행위의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배경, 전후 사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행위 판단
- 학대 사례 판단 관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체 · 사례통합회의 결과 참고

5. 아동을 집 밖에 내보내 들여보내지 않는 경우

- 부모가 집 밖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겪는 두려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아동이 일체 주거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경우, 정서적학대(또는 방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 사건 발생 전·후 맥락을 고려하고 아동의 주거지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한 사례도 존재

학대 인정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1520] 친부가 동생과 다투어 울고 있던 피해아동(4세)에게 “<u>그만 울어. 계속 울면 내뿔을 거야</u>”라고 말하며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 정서적 학대 ➔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면서 투시경을 통해 피해아동을 계속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 [서울북부지법 2021고정90] '19년 8월경 피해아동(15세)이 등교를 하지 않고 새벽에 뒤늦게 귀가하며 현관문 벨을 누르자 “<u>왜 들어왔냐, 나가라, 벨 한 번만 더 누르면 손가락 잘라버린다</u>”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찜질방에서 자게 하여 방임 ➔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찜질방에서 자게 함으로써 정서적학대 및 방임
학대 불인정	[○○청 혐의없음 송치-검찰 불기소] '23.11.25. 양모가 피해아동이 성당 예배를 가지 않았음에도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고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피해아동을 정서적 학대 ➔ 피해아동이 반성을 하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점, 평소 경계성 장애인 피해아동의 교육에 평소 힘쓴 점, 피해아동은 피의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하나 실제 비밀번호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피해아동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뿐이며 “피해아동의 지적 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교육에 신경 쓰고 있고, 쉼터에 간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는 피의자의 진술로 볼 때 진심으로 피해아동을 걱정하고 많은 애정을 가지며 보호·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보호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아동이 일체 주거지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는지 여부, 교사·친구·기타 보호자 등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학대의 고의 판단

3 유기

- ▶ 유기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학대 인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922] 친모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아동 친부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바닥에 피해아동을 두고 와 유기 ➔ ①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4~5개월 전후의 유아에 불과하였던 점(피해아동은 임신 27주 3일 만의 미숙아), ②주거지 앞에 각 두고 온 시기는 날씨가 추운 겨울철(첫번째 유기 당시에는 피해아동을 보자기에 써서 찬 건물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였고, 두번째 유기 시에는 내복을 입은 상태로 아기띠만 매어진 상태) ③ 첫번째 유기 당시 친부에게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은 채 주거지 앞에 두고 현관문을 노크한 후 아동을 놔두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친부가 피고인의 목소리나 아동 울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간과했을 경우 아동이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④피고인은 두 번째 유기 당시 친부에게 사전에 아동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고 전화하였으나 당시 친부는 거주지를 나와 밖에 있었고, 피고인은 아동을 친부의 주거지인 4층 현관 앞도 아닌 빌라 1층 현관 앞에도 두고 왔으므로, 아동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미필적이나마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수원지법 2020노58] 피고인은 사우나 여성 전용수면실에 잠이 든 피해자(3세)를 그대로 두고 워 사우나를 나가서 유기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다툰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해아동을 사우나에 그대로 두고 외출하였다가 다시 찾으러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63] 피고인은 경제 사정 등 양육의 어려움으로 생후 8개월인 아동을 05:27경~07:35경 보육원 앞에 유기 ➔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한 추운 겨울, 보육원 직원들을 비롯한 원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대에 아동을 유기하였고,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동이 2시간 후 다른 원생에 의해 발견
학대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4008]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경제 사정 등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피해아동을 놓아둔채 장소를 떠나 유기 ➔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동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동들을 돌보기 위하여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피고인도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동들을 공동체에 맡김

수사 시 착안 사항

- ① 보호 없는 상태에 아동을 두었는지 ②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 ① 인계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담당자와의 대화 또는 인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아동 보호 공백 및 위험성이 있었는지 확인, ② 인계 전 산후조치 미수행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거나 아동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 발생 개연성이 있었는지 확인

4 방임

- ▶ 방임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

학대 인정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3고단224] 피고인(친모)은 2016. 12.경~2020. 12.경 피해아동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않거나 빨래와 청소를 하지 않고,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며, 당시 10세에서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A에게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동생들의 목욕 등 집안일을 시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고, 집안일을 아동 A에게 전가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 입장에서 그 학대행위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아동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또한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아동들은 향후 결핍된 정서를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법 2021고단4930, 2021고단974] 피해아동을 침대에 재우고 씻으러 간 사이, 피해아동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이마에 멍이 생기고,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방임
학대 불인정	[대전지법 2018고단3564] 피고인(친모)은 피해아동(11세)의 이가 썩었고 통증이 있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아 방임 ➡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진통제를 주어 복용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치과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치과치료가 고통스럽다며 이를 거부한 점 등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고단2756] 피고인(친모)은 피해아동들(9세, 8세)을 놔두고 집을 나가 열흘 정도 돌아오지 않는 등 수시로 집을 나가는 등 방임 ➡ 피고인이 가출을 하였을 당시 다른 자녀(22세, 20세, 18세)가 같이 주거지에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에게 피해아동들에게 끼니를 챙겨주고 집안 청소를 해 줄 것을 부탁한 점, 다른 자녀들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잠시 돌봐주러 주거지에 오는 등 피해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유기 내지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출생미신고의 경우 단순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육적·사회적·의료적 방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학대 인정	[인천지법 2015고단6538, 2016고단2510] 피해아동(3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인천 ○○구에 거주하다가 피해아동을 유기한 채 가출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유기 및 방임 ➔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 피해아동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
	[의정부지법 2020고합512] 피고인(친모)은 2019.6.18.경 ~ 7.29.경(하계방학 개시일) 30일간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 다른 사정으로 아동을 귀국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무단 결석 기간동안 관계자들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아동을 직접 교육할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춘천지법 2019고단668, 2020노702]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야”라고 말을 하고 <u>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여 방임 /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며 치과 질환을 방치하여 방임</u> ➔ 피고인은 2세~10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고, 아동들은 그 건강에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수사 시 착안 사항

- 의료적 방임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소견 자문 및 학대와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간 인과관계 등 법의학적 감정 요청
- 아동과 학대행위자 간 분리 등 보호조치 외에도 아동이 분리로 겪을 정서적 영향 및 학대 행위자의 성행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조치 5호(아보전 상담 및 교육 위탁) 검토

5 보호자 없이 아동만 두는 행위 (아동 방치)

▶ <국내> 보호자의 아동 방치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 없음

- 「도로교통법」 제53조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반 시 벌금(30만원↓)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 조항 있음
- 건조물, 차량 등에 보호자 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는 벌금(3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구자근 의원, 2108371) 발의된 바 있음

▶ <해외> 미국·영국·호주·캐나다에서 아동 방치 처벌 입법례 확인

- ▶ <미국 「매릴랜드 주 가족법」> 8세 이하의 아동 보호 의무자는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의 차량 안에 문을 잠근 채로 아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하의 징역)
- ▶ <미국 「괌 자치법」>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6세 미만 아동을 차량 안에 혼자 15분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50달러 이상 500달러 미만의 벌금)
※ '17.10.4. (연합 등 다수 보도) '韓 판사 부부,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했다가 체포돼'
-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법」>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6세 미만 아동을 12세 이상의 감독자 없이 차량 안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100달러 이하의 벌금)
- ▶ <영국 「아동청소년법」>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징역)
- ▶ <호주 「형법」>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합리적인 보호나 보살핌 없이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방치한 시간의 부당 여부는 상황에 근거한다. (3년 이하의 징역)
- ▶ <캐나다 「아동보호법」등 해석례> 3개 주에서는 아동을 혼자 혹은 다른 아동들 책임하에 혼자 두어도 되는 최소 나이(12세 또는 16세) 설정하였음 / 아동의 나이는 법원이 적절한 돌봄과 감독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임

▶ <사건 분석> 대개 유기·방임이나, 정서적학대 적용한 케이스도 있음

- ▶ <(OO청) '22.3.1.-8.10. 주거지에 13세의 피해아동을 혼자 둔 채 피의자(친모)의 재혼한 배우자와 타 주소에서 지내며 주 2-3회 방문하는 등 방임
⇒ 피의자는 “아동을 컴퓨터에 맡기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주 몇 차례만 방문하였다”며 혐의 시인, 구속 송치(혐의인정), 검찰 구공판(8월 집유)>
- ▶ <(OO청) '22.12.9. 20:30경 양부모가 주거지 내에 5세인 피해아동을 홀로 두고 외출하여, 위 시간 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아동이 사망하는 등 방임
⇒ 수사 결과 평소 영양 및 위생상태 불량 확인되는 등 송치(혐의인정), 기소 후 재판 중>
- ▶ <(OO청) '21.1.8. 주거지에 만 4세인 피해아동을 홀로 둔 채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약 9시간 방치하고,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방임
⇒ 피해아동은 영하 15도에 노상에서 내복차림으로 발견되었는데 이웃 진술에 따르면 이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던 점, 평소 주거지 내 생활 쓰레기 방치 및 영양 부실 등 방임 인정되는 점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검찰 기소유예>

- ▶ <판례 분석> 외출 방치의 경우, 외출 시간보다는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유죄 판결**(징역형은 집행유예)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아래 판례는 전원 만 5세 이하

학대 인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고단612] ⇨ 벌금형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2014. 3. 11. 12:00경에 피해아동(3세)을 위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지인(38세)이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방치하여 방임
	[청주지법 2020고단2478 판결]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2020. 2. 16. 13:00경 피고인(친모)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아동(3세)을 혼자 두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온 후 같은 날 14:00경 시어머니이자 피해아동의 친할머니가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혼자 방치하여 피해아동의 의식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고정73] ⇨ 벌금형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2015. 6. 2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당시 생후 5개월이던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히고, 선풍기를 침대 방향으로 켜 둔 다음 출입문과 창문을 전부 닫아둔 채 가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친부가 귀가하여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여 방임
	[인천지법 2018고단3507]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2017. 3. 15.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16. 02:14경까지(약 6시간) 주거지에 피해아동(생후 4개월)을 혼자 두고 나가 방치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고단233]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2016. 1. 4. 1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생후 10개월)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피해아동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 방임
학대 불인정	[○○청 혐의없음 송치 - 검찰 불기소] 친모가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변사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뒤집기를 하지 못하게 쿠션으로 조치하여 눕힌 뒤 2시간 동안 홀로 둔 채 외출한 사이 변사자가 베개 사이로 엮어져 사망 ➡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충분히 시켰고, 피해아동이 쪽쪽이를 물고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뒤집기를 하지 못하게 벨트를 채우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채 외출을 하였기에, 피해아동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사건 발생 당일 외 장시간 외출을 한 적 없고 평소 육아에 신경쓰는 등 아동 방치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증거 없음
	[○○청 불입건결정] 피혐의자(친모)는 피해아동(만 4세)과 함께 친구의 오피스텔(7층)에 방문 후, 피해아동이 다른 또래 아동들과 함께 집안에서 노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방문한 약 10분 사이 피해아동이 창문 밖으로 추락 ➡ 피혐의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아동이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약 10분간 집을 비운 행위가 유기 및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인정 어려움

- 주거지 내 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한 후 **아동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험에 노출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별도 방임 인정

학대 인정	[울산지법 2015고단533]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 피고인(친부모)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두고 방치한 채 ○○랜드를 가는 등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아동이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게 하는 등 방임 -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두고 방치하여 피해아동이 작은 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서 3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 1층 노상에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해 방임
	[인천지법 2021고단427]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A(6세) 및 피해아동 B(2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새벽에 주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피해아동 B가 새벽에 혼자 팬티만 입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도록 하고, 행인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해 귀가를 요청하자 그때부터 귀가하지 않고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받지 아니함으로써 방임
	[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고단351]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21.8.14. 15:24경 주거지에서 당시 여름이라 온도가 높은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아동(4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는 등 주거지에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하였고, 같은 날 21:03경 더위에 지친 피해아동이 나체 상태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이웃주민에게 구호 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너가 키워, 살기 싫어서 진짜 디지러 나왔는데”라고 답하는 등 방임

- 판례는 평소 **방임 행위의 횟수·반복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

학대 인정	[대구지법 2019고단6620]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유 별도 미기재) 피고인(친모)은 ① 2017. 5. 중순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을 하여 방임 ② 2018. 3. 9. 20:00경 주거지에서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방임 ③ 2019. 3. 3. 19:50경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2년 7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
----------	---

수사 시 착안 사항

- 아동의 월령별 발달적 특성 고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장시간 방치하였는지 여부 검토
- 보호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기지국 위치분석, 금융거래내역분석 등으로 평소 외출 방임의 횟수 및 반복성 확인 필요

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 최근 이혼 소송 등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부부 상호 간 아동학대 · 미성년자악취유인 등 고소하는 경우 있으며, **발생 후 시간이 상당 경과한 건은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이 특히 중요**
- ▶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물적 증거 없고 관련인 진술 상반될 경우, **진술분석전문가 진술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되고**,
 - 아동 · 장애인 조사 기법에 따른 피해아동 진술은 진술 오염 및 유도 가능성 적고 개방형 질문에 따른 구체적 답변으로 신빙성 인정
- ▶ 제3자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거나 발언의 자발성이 의심될 경우, 아동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는 판례의 경향 참고

학대 인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고단1976] 부부가 피해아동(8세)이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cm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랑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는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실대로 말하기 훈련,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피해아동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아동의 기억 내지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음 ③ 피해자의 얼굴과 종아리에 매우 큰 상흔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촬영 증거가 있는 점, 피해아동이 이전까지 부모인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을 표출한 바 없고, 기록상 피고인들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었던 점, 법원 참여 결정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진술의 번복, 상황 파악의 어려움, 기억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서 비롯된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고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고단2776] 피고인(계모)은 피해아동의 귀가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주방에 있던 가위를 던지면서 “네 가방을 찢어라, 네가 찢지 않으면 내가 찢겠다”라고 하고,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옷걸이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리는 등 신체 ·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분석 결과 등 토대로 혐의 인정
-------	--

학대 인정	[인천지법 2015고합603]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고,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아동의 다리 양측 허벅지 부위에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리 양측 허벅지 안쪽 부위와 우측 다리 종아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2도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학대 ➔ 피해아동(5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상담원이나 전문심리위원 등에게 "이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다 주방에 있는 주전자를 가져와 바지를 벗게 한 후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화상을 입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학대 불인정	[○○청 혐의없음 송치- 검찰 불기소] 피해아동이 "가지가지 하네."라고 말하는 등 말대꾸하고 동생을 때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약 20분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씨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 피해아동은 "침터에 들어가고 싶어서 과장했다."라며 피해 사실 반복하고,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아동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판단하였을 때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피의자를 공포의 대상이라고 진술하던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687] 계모는 피해아동(5세)을 수회 플라스틱 자로 때리는 등 신체적학대하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자 짜증을 내며 "울지 좀 마. 잠을 못 자잖아. 자는데 시끄럽고 방해가 되니 나오라."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 ➔ 친모와 피해아동 사이의 대화 녹취 내용은 주로 친모가 피해아동에게 답을 유도하는 형식이고, 내용도 계모가 피해아동을 혼내거나 때린다는 내용이 전부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녹취록의 경우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길게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뒤로 상당한 기간 경과 후 갑자기 그와 같은 언급을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 시간의 경과 및 암시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수사 시 착안 사항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피해아동과 라포를 형성한 상태에서 개방형 질문 중심으로 진술 청취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국선변호사 선임 철저)
- 진술분석전문가의 진술분석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일반전문가 자문 활용으로 기타 피해아동의 심리상태와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

참고 기타 가정 內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 **〈처벌불원 시〉** 「아동복지법」 위반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진행

– 처벌불원 의사는 학대범죄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다투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판례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

*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고단1976 판결)

아동이 경찰 수사 중 “아빠네 어떻게 벌을 줘요”라고 진술한 내용은 전후 맥락과 함께 아동이 두려움을 거듭 호소한 점을 더하여 보면 가족 관계를 감안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특별양형인자로 취급 불가

- ▶ **〈임시조치 신청〉** 가정 내 아동학대는 은폐성이 높아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전 학대 및 임시조치 위반 이력 고려해 재발 가능성 높을 경우, 임시조치 1~3호 외 4호(친권제한)·5호(상당 및 교육위탁)·6호(의료기관 위탁)·7호(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필요성 검토하고 병행 신청

※ 가정폭력과 달리 별도의 임시조치 위반 없어도 임시조치 7호 신청 가능

- ▶ **〈아동보호사건 송치 적극 활용〉**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결과 주변정황·신고이력·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가정의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사건 의견 적극 활용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활용해 응급조치 및 분리 등 필요성 검토하고, 자체·통합사례회의로 사례 판단 및 보호계획 수립 연계 가능

⇒ 가정 내 훈육과 학대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 대한 사례회의 결과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판단 시 참고하고, 사법처리 외 가정 보호 필요성 및 방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보 철저

통보 근거 법률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⑦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판례 및 수사확인사항을 중심으로

III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Ⅲ.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1 학교 내 학대 · 훈육 판단 기준

- ▶ 「아동학대처벌법」 및 「초 ·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나,
 -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서는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여부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 과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판례는 훈육, 훈계의 방법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한다.

대표 판례 :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 5380

초 · 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 ·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건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 · 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요 내용 요약

①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42쪽)

- (신체적학대) 위험한 도구 활용 확인, 멍 등 명백한 신체외상 확인 및 관련 의료기록 확보
- (정서적학대) 심리학·아동학 전문가 및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 등 자문, 범죄피해평가, 통합사례회의 실시

②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47쪽)

- 유관기관과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아동·피해사실 확인, 여러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 확인
- 행위가 짧은 기간 발생해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고 수업 참여권 등 침해 없을 경우 학대 불인정

③ 행위의 목적 및 배경 (48쪽)

- [규율 내 범위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학급 회의로 합의된 내용인지 확인
- [교육·훈육 목적 여부] 수업 중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확인
- [다른 수단 활용 가능성] 언어적지도·신체 접촉 등 다른 교육적 수단 있음에도 물리력 행사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요청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 보호자나 담당 교사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의 특성 고려

④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54쪽)

-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아동의 나이·체구·지적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
- 나이가 어릴수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학대로 인정되는 경향

⑤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행동·태도) 및 영향 (55쪽)

-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느끼는 수치심·모욕감 및 스트레스·장애·불면증 등 부정적 영향 확인
- 일기장·의무기록·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확보, 필요 시 범죄피해평가 실시

⑥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56쪽)

- 학대행위 목격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지 확인
-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상담교사·담임교사 등 진술 확인

⑦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평소 교육 방식 (57쪽)

- 행위자의 경력·근무 기간을 토대로 아동 특성 및 적합한 교육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인지 확인
- 학생 및 동료교사로부터 평소 교사의 성품 및 교육방식,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 확보

⑧ 교육기법 (59쪽)

-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 행위가 특수교육이론 및 기법에 포섭되는지 여부 확인
- 교육의 특수성 인정되더라도 행위태양 중하거나 상해 발생 시 학대 인정
- 교육 전문가 상대 자문 및 관련 서적 등 참고

⑨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60쪽)

- 아동 조사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실시
- 진술분석전문가 진술분석으로 진술 신빙성 판단
-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한지, 허위가 기재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지 검토

3 주요 판례 및 수사착안사항

〈 지침에 대한 설명 〉

- ▶ 본 지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주체인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취합한 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수사착안사항(판례 포함)**을 적시하였다.
※ 기준에 부합하는 판례 취합을 위해 일부 판례는 그 주체가 보육교사 · 강사 등 경우도 있음(별도 명시)
- ▶ **수록된 판례들은 전문이 아닌 일부 발췌**로, 아동학대 여부는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및 경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이 받은 영향 등 **전반적 상황 및 아래의 구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에 적시된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1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1. 신체적 학대

- ▶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스테이플러 · 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명 등 상해 발생 시 신체적 학대 인정**한 경우 있고,
- 불을 꼬집거나 꿀밤을 주듯이 머리를 때리고 종이로 된 교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인정**한 판례 있음

학대 인정

[대전지법 2018고정465] 교사가 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아동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아동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에서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신체적 학대

➔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태양 자체로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교사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교사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의정부지법 2019고단4974] 체육교사가 줄넘기를 아동에게 던지고, 앉아 있는 아동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일으켜 세운 후 발로 아동의 왼쪽 허벅지를 차 신체적 학대

➔ 아동이 수업시간 중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교사가 이름을 여러 차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등 주의를 주어도 집중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심하게 폭행**

학대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2708] 교사가 “너 때문에 친구들이 못 놀잖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아동의 머리와 가슴, 볼을 수회 때리고, 아동의 가슴을 발로 차고, 칠판 앞 의자에 강제로 앉혀 신체적 학대 ➡ 행위 대양 및 정도, 횟수, 피해아동 및 이를 지켜본 다른 아동들의 반응 등 종합 시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094] 교사가 손바닥으로 아동의 볼을 비비고, 주먹으로 아동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 ➡ 교사가 양손을 모아 아동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몇 차례 올려쳤고, 아동은 그 때문에 얼굴이 뒤로 젖혀질 정도였으며, 촬영한 사진 상으로는 멍 자국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관련한 상해 진단서 및 담당의사의 답변이 있는 등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단1039] 교사가 아동에게 교실 뒤에 서있으라며 벌을 세우고, 아동이 벌을 서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인형이 달린 나무 막대기를 세게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막대기로 아동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에게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 ➡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대구지법 2022고단1289] 교사가 아동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와 손으로 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을 마친 직후 아동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를 하던 중 아동이 교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아동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아동의 이마를 밀쳐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인천지법 2019고단5681] 교사가 아동이 친구들과 떠돌고 소란스럽게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아동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아동에게 상해를 가해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철제 스테이플러를 집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고단3454] 교사가 아동(남, 10세)이 “삐보 삐보”라고 하며 전등을 끄려 가자 그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다 눈 감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동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아동의 볼을 잡고 비상계단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아동의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 ➡ 아동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각종 학대행위를 하였고, 교사의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아동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및 정서적 부작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학대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2017노513] 교사가 양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꿀밤을 주듯 머리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 ➔ 비록 교사의 훈육방식이 다소 거칠고 적절치 못한 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아동들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볼 증거 없으며, 단순히 볼을 꼬집거나 꿀밤을 주듯이 머리를 1회 때린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15고단2572] 교사가 딱딱한 종이로 된 교구 문치의 면을 이용하여 아동의 머리 위쪽을 1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 아동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감정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종이로 된 교구 문치의 면을 이용하여 1회 폭행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산고법 2020노570] 교사가 양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 ➔ 규칙에 따른 행위로 교사의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전수조사 결과 다른 아동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는 1회이고 지속기간은 1~2초에 불과하여 학대라 보기 무리

수사 시 착안 사항

- 멍 등 명백한 신체 외상이 확인된다면 사진 등 첨부, 의사 진단서 및 소견 확인
- 행위자와 아동의 체격 비교로 유형력 정도 확인, 사건 현장 사진 확보
- 학교 內 CCTV 설치 의무 없으나 일부 복도 · 체육관 · 운동장 등에 CCTV 설치한 경우 있으므로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영상 확인 불가할 경우 목격 진술 최대한 확보
- 신체에 대한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해당 행위를 겪거나 목격한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해 확인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면 학대 부정

2. 정서적 학대

- ▶ 다른 아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따돌리고, 욕설 등 고함을 지르며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경우 정서적 학대 인정한 판례 있고,
 -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아동에게 일정한 행위를 지시한 경우 정서적 학대 불인정한 판례 있음

학대 인정	[광주지법 2022고합36] 교사가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아동의 왼쪽을 향해 내리치면서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을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고,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가져와 야구방망이로 교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나, 월요일 각오해라.”고 말을 해 정서적학대 ➡ 피해아동들에게 사용한 단어나 표현은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과격하고,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두드릴 경우 유리창이 깨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건 당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이 있는 교실 안으로 튀어 자칫 피해아동들이 다칠 수도 있었음
	[서울남부지법 2016고합91] 교사가 학생들의 등짝을 때리는 방법으로 지도(일명 ‘사랑의 매’)하고, 학생에게 “개새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전학가라” 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수업 중 연필을 떨어뜨리거나 양손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고, 목소리를 작게 내어서는 안됨 등)을 정한 후, 아이들이 이를 위반 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아이들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여 차별행위하고, 아이들 간 이간질 및 따돌림을 조장
	[서울동부지법 2019노424] 교사가 피해아동에게 “00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 ➡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발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교사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음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627] 교사가 아동A(7세)가 작성한 일기를 검사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아동에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애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혼내야 돼? 안 내야 돼?”라고 말하고, 아동B(7세)가 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반 친구들로 하여금 아동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4명)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고려



학대 불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정520] 교사가 피해아동을 ‘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엮드려 있게 해 정서적 학대 ➔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554] 교사가 아동들 2명(10세)이 손을 들지 않고 말을 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로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미리 말한 다음 피해아동 2명을 포함한 아동들 3명을 30분~1시간 30분간 교실에 남게 하였고, 교실 안에서 이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와 놀고 있었다’는 다른 아동들의 진술에 따르면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고려

수사 시 착안 사항

- 심리학 · 아동학 전문가 및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등에게 아동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해 자문하거나 범죄피해평가 실시로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 사회적 피해 종합 평가
- 정서적 학대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통합사례회의를 진행, 지자체별 전담 의료인 · 법조인 등 자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
- 발언의 정도 및 내용, 행위의 위험성 및 행위로 인한 반 전체 강압적 분위기 조성 여부 확인을 위해 행위를 목격한 아동들 상대로 풍부한 진술 확보

②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 ▶ 판례는 아동별 1회씩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같은 반 내 여러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전체 행위의 반복성 인정
- ▶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복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고 기타 수업 참여권 침해 없을 경우 학대 불인정

학대 인정	[대법원 2022도1718] 교사가 피해아동(13세) 등 3명의 학생들이 수업시간 종이 올렸음에도 교실 뒤쪽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3분간 엎드려뻥쳐를 시키고, 말대꾸를 하였다며 손으로 아동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하고, “화장하면 술집여자 같다” “너네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속옷이 보인다. 그런거 보면서 남학생들이 침을 질질 흘린다. 그런데 나도 남자다” 등 발언해 성적 학대 ➔ 피고인은 6개월 동안 3회의 체벌을 하였고, 수업시간 등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학생 별로는 1회씩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규지법 2020고단2298] 교사가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아동의 친구들이 물통을 주워 피해아동에게 주워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적 행동 등을 통하여 ‘19.3월 초순경~’19.7.5. 경 총 1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짐
학대 불인정	[대규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707]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피해아동을 복도로 내쫓은 후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 ➔ 피해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서는 자습이 이루어졌을 뿐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는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담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음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고단55] 교사가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미는 등 신체적 학대 ➔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교사는 당시 수십 명의 아동을 담당하며 행위의 정도와 태양, 반복성이나 기간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수사 시 착안 사항

- 유관기관(지자체·행정기관)과 설문지 및 직접 조사 등 적의의 방법으로 전수조사 실시, 평소에도 해당 행위 있었는지 여부 확인하고 추가 피해아동 및 피해사실 인지

③ 행위의 목적 및 배경

- ▶ 판례는 학대행위자의 행위가 규율 범위 내 행위인지, 교육 · 훈육 목적인지, 다른 수단 활용 가능한지, 타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고려

1. 규율 범위 內 여부 확인

학대 인정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707] 교사가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회 하도록 하여 신체적 학대 ➡ 구두주의, 상담, 격리 등 학칙에서 정한 훈육, 훈계의 단계를 무시한 채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교육 지도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도1718] 교사가 피해아동(13세) 등 3명의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이 울렸음에도 교실 뒤쪽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들에게 3분간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말대꾸를 하였다며 손으로 아동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학대에 해당
학대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2016고정126] 교사가 아동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5~20분 동안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은 후 머리를 벽에 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처음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벌로 사실확인서와 반성문쓰기, 생각의자에 앉기를 정한 점,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하는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위와 같은 벌로는 개선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27. 학부모들에게 '공부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보내어 그 의견을 취합하기도 한 점, 6.경 반 학급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실 앞에 꿇어앉아 있기, 투명외자 하기를 벌칙으로 정하였는데,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벌칙을 받는 중에도 장난을 치는 행동이 계속되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벽에 대고 있도록 함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554] 교사가 아동 D(10세)가 발표 수업 중에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며 아동에게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은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미리 말한 다음, 아동들을 교실에 남게 하였고, 교실 안에서 이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점, 다른 아동들 진술에 따르면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이들을 훈육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점, 평소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려

수사 시 착안 사항

- 학교 내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통보 후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후 수사에 참고
- 학대행위자가 훈육 및 지도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칙 등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중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학급 회의를 통해서 합의되었거나 아동에게 미리 고지된 내용이면 학대 불인정한 사례 참고
 - ※ 단 합의되었거나 미리 고지된 내용이라도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합의된 내용이 지나치게 아동들의 의사를 제한하는 경우인지 검토하여야 함

2. 교육·훈육 목적 여부 확인

학대 인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노252] 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저 새끼는 정말!", "저 자식은 어떻게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저 개새끼는 정말!", "저 새끼 어머니는 저 새끼 공부 못하고 다니는 것 아실지"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교사의 욕설 등 행위의 기간, 횟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주된 목적이 아동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에 있었을 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동들을 훈육하는 데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해당 행위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단941] 교사가 피해아동이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여 교실에서 "00선생님이 부르신다. 가봐라. 으이고. 너 어쩔래!"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친구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의심,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E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고 말하여 정서적학대 ➔ 아동이 비행행위 존부나 비행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동과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행행위를 단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훈육 또는 훈계의 목적에서 발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아동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단정하고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동이 비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10세 아동(여)에게 건디기 힘든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방법이 지나치고, 자신의 행위가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아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4903] 교사가 나무막대기로 아동의 팔을 3회 찌르고, 긴 원통형 막대를 바닥에 던지고, 아동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강압적으로 자리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해 신체적 학대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 대응한 것으로 보임



학대 불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2572] 교사가 피해아동을 혼내는 과정에서 <u>교실 밖 복도로 피해아동을 쫓아내고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주는 등 정서적학대</u> ➔ 피해아동만 쫓아내거나 명심보감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행해진 행위로 차별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아동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감정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학대라 보기에 무리
	[서울북부지법 2019노588] 교사(특수)가 아동을 상대로 1:1 개인 인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u>아동의 엄지손가락 끝을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아동으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게 하여 신체적 학대</u> ➔ 자폐 경향의 아동이 수업 도중 코 판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 과잉 행동을 하여 이를 교정, 치료하기 위해 ‘촉 자극을 강화하는’, ‘누르기(압각)’의 행동치료를 한 것이고, 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상해에 준할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고단272] 교사가 피해아동에게 <u>"니네 집은 카메라 살 돈은 있으면서 가위랑 풀 살 돈은 없냐"</u>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 ➔ 교사는 2016. 3. 3.경 피해아동 및 그 모친이 학교 폭력을 대비하여 교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서 교실 뒷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자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교실 내부를 촬영하지 말라면서 카메라를 돌려 준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가 피해아동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가위와 풀 등 교구를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준비하지 않자 준비를 잘하라면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고단55] 교사가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미는 등 신체적 학대 ➔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각 주장 내지 진술이 상반되고,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수십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수업 시간의 질서 유지 및 훈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의 정도와 태양, 반복성이나 기간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법 2021고정992] 교사가 아동이 같은 학급 여자 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u>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 등을 가해 신체적 학대</u> ➔ 교사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대라 보기 무리

수사 시 착안 사항

- 아동에 대한 훈육·교육의 목적이 아닌 인격적 비난의 목적(아동의 비행행위를 단정, 감정적으로 화 표출, 발언·행위로 아동이 수치심·모욕감을 느낌)으로 행해진 행위는 학대 인정
- 아동에 대한 훈육·교육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수업 시간 중 질서 및 안전 유지(자해 등 과잉행위, 수업 진행 방해)를 위해 행해진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학대 불인정

3. 다른 수단 활용 가능성 확인

학대 인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고단1109] 교사가 아동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실 뒤편으로 불러낸 다음 “왜 안 했냐? 내일 숙제 안 해오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아동의 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아동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신체적학대

-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동이 숙제를 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는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대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강한 물리력이 수반된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지도 또는 훈육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인천지법 2019노2888] 축구부 감독이 아동이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

- ➔ 목적이 아동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함이었다면 아동에게 훈계 이유를 말하고 버스에 늦게 탑승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훈계하였어야 하는데 아동에게만 행위가 이루어져 화가 난 감정이 폭발하여 나온 행동으로 볼 개연성이 높은 점, 선수지도 및 교육상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아동을 지도·교정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으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수단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점, 해당 행위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청주지법 2020고단26] 교사가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독립된 옆 교실(일명 ‘지옥탕’)로 보내 수업 종료 후 쉬는시간까지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

- ➔ 아동들 진술에 따르면 ‘지옥탕’이라는 용어는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고, 아동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동 연령(만 6세) 고려 시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 있었다고 보임. 학칙 상 훈계·훈육 방법으로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실 내 격리조치 및 특별과제 부과 등에도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학부모 상담을 거쳐 징계 조치를 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교실 내 격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내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잠시 격리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동을 혼자 격리시키는 행위가 수업 진행 및 훈육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학대 인정	[대구지법 2022고단345]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아동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신체적 학대 ➔ 교사가 아동에게 행한 물리력의 방법 및 강도,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방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교사가 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법 2019노1111] 교사가 아동들 앞에서 피해아동을 엮드리게 한 후 어깨부위를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 ➔ 설령 교사가 아동들을 조회 시간에 집중하게 하거나 수업시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 하에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적 지도나 좀 더 가벼운 신체적 접촉 등 아동들의 신체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아동들의 머리 부위를 직접 때리거나 어깨 부위를 발로 밟는 방법을 택하였으므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
학대 불인정	[대법 2017도12742]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아동(5세, 발달장애)이 놀이도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의 팔을 잡아들여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교사는 장애아동 3명의 지도를 전담해 왔고,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온 점, 당시에도 아동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교사의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은 없는 점, 이후 아동은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고, 교사는 수업시간에 아동 옆에 앉아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행위로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한 점 종합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수사 시 착안 사항

- 다른 교육적 수단(언어적 지도 · 신체 접촉)이 있음에도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학대 인정
※ 약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이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추혹징 제재 △차별적 조치 △상해 △불필요한 모욕감 유발의 경우 인정
- 학칙상 허용되는 훈육 · 훈계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외 방법을 활용한 경우 학대 인정
- 개별적 아동 지도 가능성에도 공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수단(욕설 · 폭행) 활용한 경우 학대 인정
- 교육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수단(욕설 · 폭행) 활용한 경우 학대 인정
- 지도 행위 전후 교육 목적이 명확하거나 불가피한 제재 수단을 활용한 경우 학대 불인정

4. 다른 보호자의 요청 여부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 확인

학대 인정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학원 강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아동을 때리고 바지 허리춤을 끌어당겨 팬티를 보이게 해 정서적 학대 ➔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법」 취지 및 제17조 금지대상의 주체가 '누구든지'인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아동의 교육을 받을 당시 법정대리인인 아동의 모친으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학대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5859] 교사가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동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동이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자주 교실을 이탈하여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사에게 '교실 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아동이 교실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들면 문을 잠그는 방법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실 출입문을 잠근 것도 대부분 그 직전에 아동이 교실 밖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등의 날인 것으로 볼 때, 교사들은 부모 요청에 따라 아동이 교실 밖을 나가지 않고 교실에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아동이 교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이 그 동안 아동의 행동습관 및 CCTV 영상을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이 문을 잠궈 아동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소변을 보게 하여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갖게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아동이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시위 행동의 일종으로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거나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하의를 벗고 돌발적으로 바지에 소변을 본 것으로 보임 [광주고법 2021노1162] 동아리 도우미(학부모)가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아동이 자리를 몰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과 달리 <u>아동에게만 “빨리 앉아”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말하여</u> 정서적 학대 ➔ 합창부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합창부원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연습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이 확인되어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학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부모나 담당 교사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체벌과 같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고 아동의 복지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대 인정
- 학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부모나 담당 교사의 요청이 있었고, 아동의 평소 특성을 고려할 때 행위의 목적이 교실 내 질서유지 및 수업 진행 등 교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학대 불인정

4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 판례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학대 판단

학대 인정	[제주지법 2016고단887] 교사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동을 왕따로 지목하여 정서적 학대 ➔ 아동이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행동들은 교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들로 구두 지도나 부모에게 가정지도를 부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미한 행동들이고,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는 행위는 왕따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단2989] 교사가 아동이 제출한 숙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숙제를 찢어버리고, 청소 시간 후에도 자리 밑에 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아동을 교실 바닥으로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 ➔ 입학 후 1~2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세심한 지도교육이 필요한 만 7세의 아동을 상대로 숙제를 찢어버리고 교실 바닥으로 넘어뜨려 학대
	[서울북부지법 2018노1060]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생활 보조 지원 업무 담당자가 아동이 휘두르는 우산을 빼앗고 손으로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약 2m 끌고 가는 등 정서적 학대 ➔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긴 하나 체구가 작은 7세 여자 아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동이 휘두르던 우산을 용이하게 빼앗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후의 추가적인 행동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아동을 잡고 거칠게 2m 이상 끌고 간 점, 피고인이 아동을 붙잡고 끌고 간 부위가 아동의 목 부위인 점 등 고려
학대 불인정	[광주지법 2019노1111] 교사가 아동들 앞에서 다른 아동을 엮드리게 한 후 어깨부위를 발로 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모습 노출하여 정서적 학대 ➔ 폭행 행위를 목격한 아동들은 6학년으로 체벌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만큼 어린 나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 사유로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

수사 시 착안 사항

-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아동의 나이 · 체구 및 지적 수준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
- 나이가 어릴수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학대로 인정되는 경향
- 해당 나이대 아동으로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미한 행동을 한다면 구두지도나 가정지도 부탁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도 훈육 가능하므로, 교사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5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행동·태도) 및 영향

- ▶ 판례는 아동이 느낀 모욕감, 스트레스, 불안 장애, 불면 증상, 수치심, 기타 정신적 고통 등 영향 고려하여 학대 여부 판단

학대 인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고정190] 교사가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 등 글을 쓴 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 화면에 게시하고, “울음 그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 ➡ 내용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고, 낙인찍는 행위이며, 아동은 사건 발생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장애 및 불면 증상을 보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단941] 교사가 같은 반 학생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려는 아동을 감시하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 ➡ 아동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동을 잠재적 비행학생으로 다루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비취질 수 있어 교육적 의미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대전지법 2019노3553] 교사가 아동의 미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u>이따위 밖에 못 만들어? 다시 해</u>”라고 화를 내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미술품을 뜯고,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쉬는 시간에 준비물을 챙기러 교실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보자 “<u>뇌가 없냐?</u>” “<u>유치원에서 뭘 배웠냐</u>”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교사로서 미술작품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동들을 위하여 칭찬을 해주면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독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화를 내며 아동들이 만든 미술작품을 뜯어 놓은 점, 교사가 아동들에게 말한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아동들을 무시하는 등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점, 교사의 행위와 말로 아동들이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점 고려
학대 불인정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고단203] 교사가 아동들이 칠판에 욕을 쓴 적이 있다는 이유로 <u>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내쫓겠다’</u>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 ➡ 교사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사용한 정확한 표현, 그 당시 교사의 표정, 말투, 말의 높낮이, 교실 상황, 교사가 위와 같은 말은 한 이후 취한 조치, 피해아동들 및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 이후 교사와 피해아동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아야 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 보기 어려움



수사 시 착안 사항

-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느끼는 수치심 · 모욕감 및 스트레스 · 장애 · 불면증 등 부정적 영향 확인하고, 일기장 · 의무기록 ·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확보
- 해당 행위 전후 아동의 지인 상대 참고인 조사 또는 대화내용 등 확보로 아동의 심경 및 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 확인, 필요 시 범죄피해평가 실시
- 특히 동급생 앞에서 정서적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해아동 · 동급생으로부터 △정확한 발언 내용 △당시 교사의 표정 △말투 △말의 높낮이 △교실 상황 △발언 이후 조치 △다른 학생들의 반응 △교사와 아동들의 관계 등과 관련된 상세한 조사 필요

6 목격자 진술 유무

▶ 판례는 아동학대 목격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 학대 여부 판단

학대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단2989] 교사가 아동이 제출한 숙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숙제를 찢어버리고, 청소 시간 후에도 자리 밑에 먼지가 있는 것을 보고 <u>아동을 교실 바닥으로 넘어 뜨려 신체적 학대</u> ➔ 아동들은 이 법정에 각 출석하여 한결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섭다. 당시 수시로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은 목격 아동들의 목격 사실 진술 또한 대체로 일관적인 점 고려
	[춘천지법 속초지원 2018고단525] 교사가 <u>양 손바닥으로 아동의 머리 및 뺨을 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u> ➔ 교사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목격자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한 G의 진술과 부합하며,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 J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사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의 정신적 · 사회적 성숙 정도, 유형력의 정도 등을 더해 보면, 신체학대 사실 인정

학대 불인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단1412] 교사가 아동이 책상의 책을 꺼내본 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지 않고 바닥에 책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아동의 옷깃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정서적 학대 ➔ 당시 교사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아동 및 학부모가 없고, 교사가 피해아동을 넘어뜨렸는지 여부에 대한 목격자들 진술이 상이하며, 교사가 피해아동의 목을 잡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춘천지법 2020고단1432] 중학교 농구부 코치가 아동이 던진 공이 골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동의 머리를 13회 때린 후 다시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아동의 머리를 15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 농구부 선수 또는 선수의 학부모형으로서 현장에 있던 피해아동들과 같은 시기 및 그 전후에 피해아동으로부터 농구 지도를 받은 자들은 교사의 폭행을 목격하거나 전후로 들은바도 없다고 진술,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고려

수사 시 착안 사항

- 목격자들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상황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지 확인
- 피해아동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동급생 · 부모 · 상담교사 · 담임교사(아동이 타 교사 행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등 진술 확인해 아동 진술 내용의 구체성 확보
- 면담조사결과지 및 집단시설사례조사결과지와 같은 서면 조사 외에도 당시 학대 행위를 목격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 확보가 중요

7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교육 방식

▶ 판례는 평소 교사의 훈육 · 교육 방식 및 피해아동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학대 여부 판단

학대 인정	[수원지법 2020고단5045] 교사가 아동이 두드러기가 심하다며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자 아동에게 '피병이다'라고 말하며 약 40분간 보건실에 보내지 않고, "○이랑 놀지 마, ○는 이제부터 투명인간이니 까 너네 ○하고 말하지 마"라고 말하여 아동이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교사가 신체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아동을 보건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특정 아동을 '투명인간'으로 지칭하면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 · 객관적으로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약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온 피고인으로서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	---



학대 불인정	[대전지법 2021고정992] 교사가 훈계하던 중 아동이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u>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초과상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u> ➔ 교사는 지도하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교사는 수십 년간 교사로 근무해 왔고 평소 성향은 순박하며 아이들을 꼬집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성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고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정520] 아동을 ‘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u>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해</u> 정서적 학대 ➔ 돌봄 전담교사가 같은 교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은폐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계약직 강사라는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신분적 지위와 이로 인한 적극적 훈육 조치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 있음. 피고인의 행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강구하지 않은 채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법 2020고합400] 교사가 줄넘기 수업을 진행할 때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아동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한 다음 아동을 곧바로 바닥 쪽으로 내려주지 않고 교사의 어깨에 아동의 다리를 걸치고 아동을 위로 일으키면서 <u>교사의 얼굴 앞쪽으로 목마를 태워</u> 각 아동의 배와 음부 부위가 교사의 얼굴에 닿도록 하여 성적 학대 ➔ 피고인은 특색교육으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었고, 수업 중 피고인에게 다가와 친근함을 표시하며 들어 올려 달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던바, 평소와 같이 아침 줄넘기 시간에 아동들과 놀아주었을 뿐 성적 학대행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수사 시 착안 사항

- 행위자의 경력 · 근무 기간을 토대로 아동의 특성 및 적합한 교육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인지 확인하고, 행위에 훈육의 목적이 있었는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었는지 확인
- 학생 및 동료교사로부터 평소 교사의 성품 및 교육방식,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 확보

8 교육 기법

- ▶ 판례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이론 및 실무 상 적절한 훈육 방식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학대 여부 판단**

학대 인정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617] 교사(재활학교)가 아동이 AAC(보완대체의사소통기) 작동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보내 연습을 하게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 ➡ 아동의 AAC 훈련 집중 목적과 화장실의 청결 등을 고려하더라도 화장실은 교육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아동의 화장실에서의 AAC 훈련 또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자원봉사 대학생이 진행하여 다른 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 볼 수 있음. 각 학대행위는 이를 목격한 특수교육 전공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학교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피고인이 행한 것과 같은 폭력이나 폭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움 [부산지법 2013고합925] 교사(고등학교 특수반)가 아동이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족자로 아동의 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약 30~40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강요 ➡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교육이론에 의한 행동수정기법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직접체벌(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함)을 통해 간접체벌을 강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교육 목적의 행동수정기법을 의도하였다거나, 2011년 학생생활지도 표준매뉴얼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를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학대 불인정	[서울고법 2021노1234] 교사(어린이집)가 아동을 가방 보관대 앞에 20분 동안 혼자 앉아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해당 행위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로, 아동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육방법으로 볼 수 있음.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따를 때 부정적 행동에 대한 벌로 적절한 조치 중 하나인 ‘타임아웃(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타임아웃 장소에 두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함)’ 훈육방식의 시행에 해당함. 다만,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을 7분에서 26분에 이르기까지 혼자 있게 한 조치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곳이 같은 교실 내의 출입문 옆이자 피고인 자리 바로 옆의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그 조치를 전후하여 아동과 잠시라도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어떠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을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였다고까지 보기 어려움

학대 불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단1474] 교사가 아동이 운동장으로 나가기 위해 빠르게 걸어갔다는 등 이유로 1분간 투명의자 벌칙을 받게 해 정서적 학대 ➔ 해당 반 학생들은 교사의 제안으로 학급 회의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동 등을 하는 학생에 대해 30초가량 투명의자 벌칙(양손을 앞으로 뺀고 엉덩이를 뒤로 빼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을 실시하기로 하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후 위 규칙에 따라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였으며,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학생의 문제 행위를 훈육하는데 투명의자 벌칙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474] 교사가 교실에서 학급 내의 모둠조(A조, B조) 중 <u>아동만</u>을 분리하여 아동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의 '세모조'로 구분함으로써 정서적 학대 ➔ 교사는 조 편성 후 수업태도나 생활태도를 반영해 조별 보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동의 불량한 자세나 태도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아동과 같은 조원들이 교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여 학급회의를 거쳐 아동을 1주일간 세모조로 구분하는 결정을 하였음.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조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1주일간 단독으로 조편성한 행위는 적절한 교육방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세모조가 그 소속 조원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뜻하는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고려

수사 시 착안 사항

-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 해당 행위가 특수교육이론 및 기법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
- 장애아동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태양 중대하거나 상해 발생 시 학대 인정
- '타임아웃'(아동을 조용한 장소에 혼자 격리시키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투명의자' 등이 교육기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교육 전문가 상대 자문 및 관련 서적 등 참고
- 교육기법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나이, 행위의 정도 · 지속성, 타 수단의 활용 가능성, 아동이 받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음

9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 판례는 피해아동이 범행의 주요 부분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감정)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

학대 인정	[대전지법 2019고단3352] 중학교 특수교사가 아동이 반성문을 제대로 작성해오지 않자 계속 반성문을 쓰게 하고 아동이 써온 반성문을 찢고 다시 쓰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목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동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 교사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영상녹화 조사 과정에서 아동이 보인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 당시 환경, 아동의 나이 및 지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5020]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아동의 운동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씹할새끼, 왜 그것도 못 치냐 병신새끼야, 총 맞아 뒤질 새끼”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 ➔ 아동은 경찰조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과거 4학년이었을 때 직접 경험하였던 일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기억해 낼 수 없는 세부적인 사실까지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아동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동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여 야구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학대 일부 인정 · 불인정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3032] 교사가 아동이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병신, 멍청이”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며, 아동에게 “오늘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면 입을 찢어놓는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불인정] 아동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직후에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 한꺼번에 그 내용을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각 일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술을 한 것이고 그 행위 횟수도 많아서 피해아동이 그 피해일시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인정]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특히 ‘말하면 입 찢어놓겠다’고 하는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아동이 사건 발생 직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밖에 아동의 나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

수사 시 착안 사항

- 피해아동 조사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로 라포 형성 후 진술 확보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조력인 참여 등 편안한 환경에서 개방형 질문 중심 조사
- 진술 외 직접 증거 없는 경우, 피해아동이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단답형, 질의내용과 관련 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 진술분석(진술분석전문가)으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한지,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지 등 검토

4 검찰 불기소 사례 및 수사착안사항

불기소

교사가 아동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아동에게 명심보감 필사를 시키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처분결과]** 피해아동 외에 다른 아동들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충학습 등 받았고 다른 아동은 대부분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점, 다양한 보충학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우연히 피해 아동이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점, 점심시간 외에는 보충학습 시간 따로 마련하기 어려웠던 점, 훈육이나 지도의 한계를 넘어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학대 인정할 증거 불충분

교사가 아동이 작성한 반성문을 찢고 손을 터는 등 정서적 학대

➔ **[처분결과]** 피의자가 반성문을 찢은 행위 관련하여, 아동이 같은 반 학생을 때리는 일이 반복되는 등 문제행동이 고쳐지지 않던 중에 발생한 일인 점, 교사가 학생의 반성문을 찢은 유사 사례(청주지법 충주지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49 판결)에서 ①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처음에는 반말로 한두줄 정도 짧고 간략하게 작성하고, 피고인이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자 처음 작성한 내용을 엑스자를 쳐서 지우고 그 아래에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임), ②학생이 선생님에게 보인 태도, ③학생의 폭력 행위와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본건의 경우 아동이 폭력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아동이 피의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교사가 학부모 참관 수업시간 도중, 발표하기 싫어하는 피해아동(7세)에게 발표를 강요해 정서적 학대하고, 발표를 하는 피해아동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3회 때려 신체적 학대

➔ **[처분결과]** 피의자 혐의 부인하고, 목격자 약 20명(학생 및 학부모) 조사 결과 피의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진술분석 결과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증거불충분

교사가 아동들(중학교 2학년)에게 18세 이상 관람 가능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해 정서적 학대

➔ **[처분결과]** 피의자가 영화를 교육적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시청케 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 고의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본 건은 교육청 민원으로 접수된 건으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및 피해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 내용 자체가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영상은 아닌 점 고려해 증거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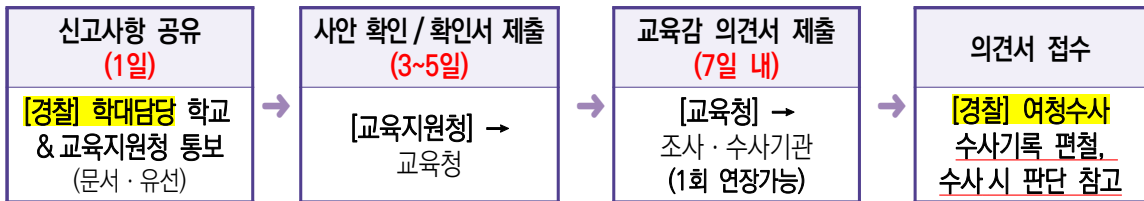
수사 시 착안 사항

- 해당 아동에게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 교사의 행위 전후 경위, 아동이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함 (예: 반성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반성문의 내용, 반성문 작성 시 아동의 태도)
- 다수의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아동 진술분석 실시 등으로 관련인 진술 신빙성 검토
- 다수의 피해아동 있는 경우 각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확보할 필요 있고,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심리전문가에게 감정 의뢰 가능

참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안내

주요 개정내용(「교원지위법」 '24.3.28. 시행)

- ▶ (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 (同 법 시행령) 신고접수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주요 Q & A

구분	질의	답변
교원의 범위	▶ 정식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운동부 코치 등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항도 통보대상에 포함되는지?	▶ 학교 측과 계약 등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 교원에 준해 모두 통보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만 통보하면 되는지?	▶ 학교·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공립·사립 구분없이 통보 대상 ※ 어린이집은 통보대상 아님
교육기관 통보시점	▶ 경찰이 교육기관에 통보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 인지?(신고접수 or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	▶ 피해자보호팀 학대담당이 전수합동조사를 통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확인 시 즉시 통보 * 112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아동학대 사건
교육감 의견서 미제출 시	▶ 개정법 상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송치 시 참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육감 의견서 미제출 시 조치는?	▶ 아동학대처벌법 상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 편철'로 규정 ⇒ 경찰통보(문서)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서 미제출 사항 수사보고 적시 후 의견서 없이 현장종결 ⇒ 경찰통보로부터 14일 이후 의견서 미제출시, 교육지원청에 사유 확인(유선·공문) 후, 별도 답변이 없는 경우, 의견서 미제출 사항 수사보고 적시 후, 의견서 없이 사건종결
이전 학대 피해건 신고 시	▶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이전 학대 피해건을 신고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는지?	▶ 사건발생 재직교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
강제추행 등 신고 시	▶ 「청소년성보호법」등 강제추행 혐의 등 적용하는 경우 통보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통보 대상이나, 해당 사안이 정당한 생활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음 이 일응 명백해보이고 피해 아동의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 우려되는 경우 피해 아동 의사 확인 후 통보 여부 결정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판례 및 수사확인사항을 중심으로

IV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V. 어린이집 · 유치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이 자연적인 점, 식사 지도 및 낮잠 시간 등 정규 수업 외 어린이집에만 있는 특수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 ▶ 판례의 경우,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등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외에도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경우 학대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 △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 △ **울음을 터트린 아동을 방치한 행위** △ **강제로 낮잠 재우는 행위** 등 다양한 학대 행위 유형이 인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081]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아동 A(3세)가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친 후 울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옆으로 이동시킨 후 A를 계속 주시하였고, 피해아동 B(3세)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 안에서 뒹굴고 있다는 이유로 B의 양팔을 잡아 앉히고 B를 계속 주시하여 정서적학대 ➔ 아동이 장난을 치고 울고 있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는 정서적학대 인정
학대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23]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아동(2세)이 울기 시작하자, 피해아동이 울다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안정시키지 않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서적학대, 피해아동이 울자 양손으로 외투를 입은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3회에 걸쳐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려 놓아 신체적학대 ➔ 정당한 사유 없이 우는 아동에게 해주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학대가 될 수 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게 된 경우,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진정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시간, 그 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외투를 입혀주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피해아동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보육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아동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아동(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을 안아 눕힌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울면서 발버둥 치는 피해아동을 약 5분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잠을 재워 신체적 · 정서적 학대 ➔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학대 인정 / ※ 아동을 강제로 재우는 행위 외 장난감을 빼앗거나 아동의 몸을 들어올리고 넘어뜨리는 등 총 41회의 신체적 · 정서적학대 있었음

▶ 보육 교사는 아동의 나이, 아동을 보호하는 지위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일반 교사보다 학대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나,

- △ 타임아웃 등 교육 전문가들 사이 인정되는 훈육 방법 사용 △ 아동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기, 아동을 다리 사이에 끼우기, 입 막기 등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 △ 학대 행위 자체가 참고인 진술 및 CCTV 등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대 불인정한 판례 있다.

학대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978]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아동(4세)이 다른 아동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u>언성을 높이며 피해아동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리며,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2~3회 반복하여 신체적학대</u> ➔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린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 바 없다.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의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304]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아동(7세)이 학습활동 시간 중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뒤통에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두, 세 걸음을 더 걸어가는 등 정서적 학대 ➔ 영상감정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귀를 잡아 들어 올리고 두, 세 걸음을 걸어갔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훈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피해아동의 행위 △ 행위 후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유형력의 내용 △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를 살 수 있으나 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태도 등으로 보아, 피해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38] 피고인(보육원 생활지도원)이 피해아동(3세)이 크게 울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울지마 난 널 안 달래 줄 거야”라고 말하며 입을 막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로 피해아동의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기 어렵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 ➔ 피해아동의 울음 소리가 크고 보육원에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이 생활하며 숙식을 하고 있어 다른 아동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유로, 새벽 무렵 피해아동이 큰 소리로 울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아동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는 소리를 줄이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오른손과 이불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대처에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대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60] 피고인(어린이집 교사)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4세)을 가방 보관대 앞에 약 20분 동안 혼자 앉아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 CCTV 영상 등에서 피해아동이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훈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아동이 교실 안을 뛰어다니고 상의를 잡아당겨 더럽히는 등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상의를 닦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을 가방 보관대 앞으로 데려가 혼자 앉아있게 하였으며, 혼자 앉아있는 피해아동 근처를 오가며 피해아동과 대화를 한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식사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훈육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혼자 앉아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훈육 방법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거나 피해아동이 혼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완전히 혼자 방치된 것도 아니어서 정신건강 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동일한 행위가 약 6회 정도 반복되었으나, △ 보육 전문가들 사이 인정되는 '타임아웃'에 해당(문제행동을 한 아동이 혼자서 시간을 가지며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보육자와 차분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훈육방법) △ 아동의 반응(즐거운 표정으로 낮잠을 잠) △ 훈육 목적 등 인정되어 학대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06] 피고인(유치원 교사)이 피해아동(6세)이 친구들과 다투었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친 후, 벗긴 마스크를 책상 위에 던지듯이 놓아 정서적 학대 →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차별하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대응이 다소 거칠게 대응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 대하여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으로 보살필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훈육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제대로 지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55] 어린이집 원장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피해아동을 감싸 안아 재우는 과정에서 약 10분간 왼쪽 허벅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은 채로 압박하여 얼굴에 다수의 점상출혈반점이 생기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피해아동 옆에 같이 누워 토닥토닥 다독이며 피해아동의 몸 위에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올려 아동을 다리 사이에 끼운 형태로 수면을 유도한 것일 뿐, 특별히 힘을 주어 아동을 압박하거나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아동 역시 다소의 움직임은 있지만 보채거나 크게 울거나 다리 사이에서 빠져 나오려고 심하게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 9분 후에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모습을 보이는 바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점상출혈반점은 아동이 심하게 울거나 보채는 등 몸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몸부림 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본 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고 아동학대 개요 및 주요통계

‘아동학대’ 정의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 : 만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아동학대범죄’ 정의

-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①아동복지법 금지행위 ②아동학대 ③아동학대범죄 구분

①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 누구든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의 행위 금지	②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③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	---	---

- ▶ 보호자가 아닌 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①·②에 해당하나 ③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 ①에는 해당하나 ②·③에는 해당하지 않음
- ▶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①·②·③ 모두 해당할 수 있음

[참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정의

- ▶ ‘아동학대관련범죄’란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 ※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연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

▶ 피해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 제8호)상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하지만,
-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6호)상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함
-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도 ‘**피해아동**’에 포함되므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에 국한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등 〉 ※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에 사용

-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응급조치) 제1항에서는 “피해아동등”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대상, 신청 · 변경, 임시후견인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보호자) 및 그 공범을 의미함 (제2조 제5호)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

〈 * 방조의 예 〉

- ▶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자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 남편이 아동을 폭행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남편에게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아내의 행위
- ▶ 남편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

‘보호자’의 정의

- ▶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 친권자

- 부모(양부모 포함)를 의미(민법 제909조)
 -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동조 제2항),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함(동조 제4항, 제5항)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후견 업무를 담당(민법 제928조)

▶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 아동에 대하여 사실상 친권자나 후견인에 준할 정도의 보호를 하고 있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 ▶ 양친부모가 없고, 일가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외)조모,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경제적·정신적·교육적 부양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등이 어린 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 단, 부모가 외출한 사이 몇 시간 정도 동생을 돌보는 경우는 미포함

- ▶ 장애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형편상 직접 돌볼 수 없어 상당한 기간 동안 대상 아동의 숙식까지 책임지는 합숙식 교육기관(양육시설)에 맡긴 경우 그 교육기관(양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
- ▶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위탁모 등
- ▶ 이혼 부모 中 비양육 부·모라도 보호자로 해석 가능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 아동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나 담당자
-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사
- ▶ 가정방문 교사
- ▶ 부모로부터 매일 일정시간 동안 아동의 보살핌을 위탁받은 베이비시터
- ▶ 법에 의하여 구금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소년원의 교도관이나 담당교사)
- ▶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정당하게 고용한 사업주
- ▶ 가출한 아동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용자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호자’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무리한 법적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취지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 해당 여부를 가급적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호조치(임시조치, 보호명령 등)와 특례(국선변호인 등) 적용이 가능



[참고] 아동 · 영유아 등 기준 연령과 법적 근거

구분	나이	근거
영유아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유아교육법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 실종아동법
아이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지원법
어린이	13세 이하의 어린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3세 미만의 어린이	도로교통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기본법
	19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보호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	19세 미만인 자 (촉법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 (범죄소년 14세이상 19세미만)	소년법
성년	19세	민법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사법처리(입건)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112신고(건)	16,149	26,048	25,383	28,292
사법처리(건)	5,551	11,572	11,970	13,008

▶ 피해자별 연령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13세 미만	8,225	8,479	9,400
13세 이상	5,447	5,965	6,196

▶ 장소별 발생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가정 내	9,983	9,973	10,554
가정 외	1,589	1,997	2,454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가이드라인

| 발행인 |

경찰청장 조지호

| 총괄 |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형사국장 유재성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여진용

| 편집위원 |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정폭력학대수사계)

경정 김수진, 경정 이해수

경감 박세진, 경위 신유정, 경사 이지환, 변호사 김보경

| 자문·감수 |

경찰수사연구원 경감 주재영, 경감 송재빈, 경감 송승권, 경위 정성남, 경위 박한실

법률사무소 윤다함 신수경 변호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아동권리보장원

| 인쇄 |

(주) 범신사(02-720-9786)

| 발행일 |

2024년 9월